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체포특권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

■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82호)

2024. 8.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희정 · 서일준 · 이종배 · 박준태 · 김태호 · 이인선
임이자 · 광규택 · 구자근 · 강대식 · 박정하 · 안상훈
송언석 · 김예지 · 이성권 · 정성국 · 조은희 · 이만희
한지아 · 조배숙 · 조지연 · 이현승 · 서명옥 · 정연욱
의원(24인)

2. 제 안 일 : 2024. 6. 7.

3. 회 부 일 : 2024. 6. 11.

※ 의안번호 : 18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4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집행권의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나,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이 확립한 상황에서 이러한 특권을 국회의원에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려고 하여도,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면 회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회기가 개시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에 마련함으로써, 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의2(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집회에 관한 요청)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영장의 대상이 된 의원은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201조의2제2항에 따른 심문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회가 집회하지 않기를 국회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시행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대한민국헌법」 제44조1)에 의해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리로서, 이를 통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음.

개정안은 구속영장의 대상이 된 국회의원 본인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2항²⁾에 따른 구속영장실질심사³⁾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회가 집회하지 않도록 국회에 요청하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
- 1)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 2)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의미가 있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리로서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조치는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해당 국회의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회기 중’이 되지 않도록 본인의 의사를 다른 국회의원에게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집회되는 것이므로,⁴⁾ 개정안에 따라 국회의원이 임시회 집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임시회 집회 여부에 구속력이 없고,

둘째, 현재도 구속영장의 대상이 된 국회의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일정 기간 국회가 집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나 기자회견 등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 6788-5016

4) 「대한민국헌법」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참고 1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

제 출

- 검사가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
-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
- 정부는 체포동의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국§26①)

본회의 보고

-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보고(국§26②)

본회의 심의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으로 상정
- 정부의 체포이유 설명(법무부장관)
- 질의·답변
- 신상발언(신청시)

의 결

- 무기명투표(국112§⑤)
- 같은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체포동의가 있을 경우 일괄상정은 가능하나 표결은 안건별로 각각 실시
-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되, 그 기간내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국§26②)

정부에 통지

참고 2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현황

- 지난 제16대국회부터 제21대국회까지 정부는 총 44건의 체포동의 요청을 하였고, 이 중 10건 가결, 16건 부결, 4건 철회, 8건 폐기, 6건이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입법기별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제16대 ~ 제21대국회 입법기별 체포동의안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가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 폐기	합계
제16대국회 (2000-2004)	-	7	2	6	-	15
제17대국회 (2004-2008)	-	1	-	-	-	1
제18대국회 (2008-2012)	1	-	-	2	-	3
제19대국회 (2012-2016)	4	2	2	-	3	11
제20대국회 (2016-2020)	-	2	-	-	3	5
제21대국회 (2020-2024)	5	4	-	-	-	9
합 계	10	16	4	8	6	44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